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710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이상기 의원 등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 등을 통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기준을 명확화함 (안 제3조)
 -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타 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함 (안 제6조의2)
 - 변경된 관계 규정 명칭을 반영함 (안 제14조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방법에 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, 기금 긴급 사용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명확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